

8. 노인인권보호지침



“정다운 미소와 친절이 함께하는 곳”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I 노인인권 정의 및 노인권리보호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2. 노인인권의 정의

노인인권이라 함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3.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운영 및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4.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

가. 입소 이전 단계

1) 시설정보 접근

가) 입소전 단계에 있어서 충실한 정보의 제공 : 시설입소를 검토하는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은 시설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1) 시설에 관한 사전정보제공
- (2) 시설생활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
- (3) 시설 운영 및 입소절차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2) 입소상담과정

가) 입소관련 서류 및 입소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 노인이나 가족 등의 보호자가 시설입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음.

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상담 환경 조성 : 입소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알게 된 개인적 정보와 사생활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장하고 입소상담과정에서 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가 타인의 방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 입소결정과 입소계약과정

- 가) 일상결정에 있어서 노인의 선택권 보장
- 나) 입소에 있어서 입소희망자에 대한 차별금지

나. 입소 초기 단계

1) 인권친화적 시설생활 안내

가) 생활노인에 대한 입소시설 및 이용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시설생활에서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고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다.

나) 시설의 생활규칙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 시설종사자는 시설에서 생활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생활노인의 규칙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시설의 서비스 목표 및 서비스 계획 수립에 있어서 생활노인의 참여를 보장

가) 사정과정에 있어서 생활노인의 참여보장 : 시설종사자는 생활노인을 자신에게 제공될 서비스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기관의 사정에 맞게 서비스에 대한 욕구수준을 조정하는 등 노인 스스로 시설생활의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돕는다.

나) 서비스 목표 설정에 있어서 생활노인의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 노인이 자신이 받을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생활노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다) 서비스 수립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 서비스수립과정은 입소한 노인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시설종사자는 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인권에 기반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정과 목표설정을 한다.

라) 생활노인에게 맞추어진 개별화 서비스 제공 : 노인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종사자가 전문성이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생활노인의 초기적응

가) 적절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나) 시설 내부 및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보장

다)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제공

다. 입소 생활 단계

1) 생활노인의 생활서비스

가) 생활노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도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1) 기본원칙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생활노인의 의사존중

(3) 생활노인의 노동활동

(4) 시설종사자와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교육

나) 생활노인에 대한 평등한 처우 : 생활노인은 성, 연령, 건강상태, 가족상황등에 따라 차별을 당하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기본원칙 : 노인의 성별이나 교육수준, 신체 기능 수준, 일상생활 동작능력 등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사후관리 : 상담을 통하여 차별 행위자의 태도와 행동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별을 당한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과 아울러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다) 생활노인의 신체적 자유 보장 및 개성 존중

(1) 최후적 수단으로서 신체적 제한

(2) 의복과 헤어스타일 존중

(3) 개인적 생활스타일 존중

라)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보장

(1) 기본원칙 : 어떠한 이유로도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한다.

(2)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조치사항

(3)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종사자의 조치사항

(4) 학대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5)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6)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7) 후속 보호조치

(8) 생활노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2) 생활노인의 보건 및 의료서비스

가) 인권개념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 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서 인권보호

(2) 서비스 제공 단계에 있어서 인권보호

- (3) 인권보호적 사후관리
- (4) 인권개념에 기반한 병원진료서비스제공
- (5) 감염병 및 사고예방에 있어서 인권보호
- (6) 투약에 있어서 인권보호

나) 인권을 고려한 재활 의료서비스

- (1) 기본원칙 : 입소노인이 같은 질환을 가진 경우라도 개인이 가진 욕구와 능력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화된 재활치료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 (2) 특정 질환에 대한 재활 의료 서비스 제공

다) 특정 질환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 (1) 기본원칙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 (2) 치매노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 (3) 와상노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 (4) 전염병 감염노인에 대한 배려
- (5) 자기결정에 기초한 약물 투여
- (6) 호스피스(임종대상자) 요양과 인권보호
- (7) 시설과 생활노인 및 가족과의 교감 형성

3) 생활노인의 일상생활지원

가) 질 높은 영양 및 식사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서비스를 잘못 수행할 경우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유지와 심리적 자존감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함.

- (1) 기본원칙 : 노인의 식생활에 대한 기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노인들의 개별 욕구를 반영하는 식사가 제동되도록 한다.
- (2)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식사 서비스
- (3) 노인의 욕구에 반응하는 서비스

나)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제공

- (1) 기본원칙 :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의 건강상태나 일상생활 동작훈련, 노인의 개인적 욕구 등에 적합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2) 노인의 자기주도적인 위생환경 조성하기
- (3) 목욕서비스와 인권보호
- (4) 노인의 자존감을 배려한 배변서비스 제공
- (5) 가정과 같은 환경 조성

다) 여가 및 문화생활의 욕구 충족 노력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는 여가 및 문화활동이 효과적이다.

- (1) 기본원칙 : 생활노인에게 시설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과 외출, 외박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2) 특정질환을 가진 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 질 좋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외부자원 활용
- (4) 자유로운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보장
- (5) 개인소유물 관리 및 소비활동의 권리 보장

- (6)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표의 자유권 보장
- (7)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보장
- 4) 노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 존중 : 이성교제, 성생활, 각종기호품의 사용 등 노인이 가지는 개별적이면서 특수한 욕구에 반응하며 이에 관한 노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 개인의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를 만족시킬 권리 보장
 - 나)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보장
- 5) 서비스의 선택과 변경에 있어서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가)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보장
 - 나)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보장
- 6) 다양한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과 고충해결 노력
 - 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 권리 보장
 - 나)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보장
- 7) 생활노인이 가족 및 외부인과 교류하도록 지원
 - 가)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보장
 - 나) 외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 보장
- (1)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 (2) 자원봉사자 등 외부자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 8) 시설 노인들의 상호존중 노력
 - 가) 동료 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보장
 - 나) 동료 노인간 차별이나 학대 예방 조치 제공
- 라. 퇴소 단계
 -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 정보제공과 퇴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 가)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
 - 나) 퇴소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 다)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 2) 전원이나 사후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사후조치 제공
 - 가)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보장
 - 나) 전원이나 사후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 다) 서비스 내역에 대한 사후조치 제공
 - 라) 사후처치, 가족보호 및 존엄한 장례서비스의 제공
 - 마) 유류품 처리에 있어서 생활노인의 유지 존중

II 노인학대의 정의 및 특성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

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 특성

노인학대의 특성은 노인의 특성, 학대 가해자의 특성, 관계적 특성, 가정 환경적 특성, 사회 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노인의 특성

- 1)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 2)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 노인이다.
- 3)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4)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받는 경우가 많다.

나. 학대 가해자의 특성

- 1)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인하여 분별이 어렵다.
- 2)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로 자아존중감이 낮다.
- 3) 공격적 혹은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 관계적 특성

- 1)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피해 노인과 가해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가 있다.
- 2) 가족 간 스트레스, 과도한 부양의 책임 등이 해당된다.

라. 가정 환경적 특성

- 1) 경제적 문제, 재산문제, 부적절한 주거환경 등이 있다.

마. 사회구조적 특성

- 1) 노인 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으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효 사상과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가 해당한다.
- 2)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 3) 노인학대는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노인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역량 및 지지망을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

III 노인학대의 유형과 발생요인

1. 노인학대 유형

가. 발생 공간에 따른 유형

유 형	내 용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나. 학대의 행위에 따른 유형

유 형	내 용	
① 신체적 학대	정 의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행 위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밀친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를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한다.
	증 상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찢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머리),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상처(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화상(담뱃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이상한 체중감소,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② 정서적 학대	정 의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행 위	욕설을 퍼붓는다. 노인에게 고향을 지른다.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말을 혐오스럽게 한다.
	증 상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표정이 없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 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무기력하다.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 한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웃는 모습이 아니다. 눈물을 머금는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눈이 쑥 들어가 있다.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③ 성적 학대	정 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행 위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성적언어, 시각적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 물건이나 흥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다.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을 행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화장실 개방 등)을 조성 한다.
	증 상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④ 경제적 학대	정 의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행 위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팔거나,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한다).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가로챈다.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대리권을 악용한다.
	증 상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채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된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⑤ 방임	정 의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생활

		비, 병원비 및 치료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 위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옷 갈아입히기, 기저귀교환, 손톱깎이, 목욕 등)를 태만히 한다.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의치, 보청기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증 상	노인의 주변환경에 오물, 대소변 등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위험한 증후가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욕창이 있다.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악취가 난다.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부수어져 있다. 식사를 거르고 있다.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⑥ 자기방임	정 의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행 위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증 상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⑦ 유기	정 의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행 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입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시설에서 퇴소시킨다.
	증 상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대표적 행위

- 고집과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 감금 또는 거주지 출입 통제 행위
-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음료 등을 단절시키는 행위
-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 원치 않은 일(노동)을 강요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뜯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체중감소
- 묵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대표적 행위

- 치대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행위
- 일상생활(식사, 생활용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
- 사회활동, 연락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위협, 협박하는 행위
- 고함, 욕설 등의 행위
- 모욕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노인과 관련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고 눈치 보는 모습
-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회피하는 모습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대표적 행위

- 강제적인 성관계 강요 및 시도 행위
- 원치 않는 스카임 및 신체일부를 만지는 행위
- 신체를 빚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 케어를 실시하는 행위

예측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진단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
-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 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예측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등의 서류 처리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를 가로챌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은행계좌에 부적절한 거래 발견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적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행위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예측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냄,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신변처리(미용, 목욕, 손톱관리, 옷 입기 등)가 안된 상태
- 노인의 건강, 주변환경의 안전위험 징후
- 불결한 주거환경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 시키고 연락,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물 거부하는 행위

예측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 시킨 후 연락 두절

2. 노인학대 발생요인

가. 노인과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 고립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과도한 요구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나.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신체적·정서적 장애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②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③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④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⑥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⑦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 된다.
⑧ 어려운 생활주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다. 가족상황적 요인

요 인	내 용
①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②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④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 사회적요인

요 인	내 용
①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②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③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④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IV 노인학대 예방방법

1.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역할

가.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 1) 신속히 유선전화(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 상담, 신고한다.
- 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 3)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4)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 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 종사자 행동강령

- 1)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3)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4)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5)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6)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7)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8)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9)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10)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11)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 12) 노인의 이성교재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13)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14)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2. 노인복지 생활시설의 역할

가.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었거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 1)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 2)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하되,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및 삭제해서는 안 된다.

나.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노인학대를 예방

- 1)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2)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3)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 4)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 5)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6)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뜯,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 7)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8)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 9)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노인복지 생활노인 예방수칙

가. 어떠한 경우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다.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라.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 마.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 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사.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아.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 자.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 차.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학대 없는 시설을 위한 종사자의 대응방법

- 가. 첫인상에 주의하고, 항상 행동을 깨끗하게 한다.
- 나. 이용자 및 가족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배려를 하고, 불만이 있어서 왔다고 하여도 싫은 얼굴은 지양한다.
- 다. 이용자 및 가족이 오자마자 인사를 하고, 상대가 흥분해도 냉정을 잃지 않는다.
- 라. 이용자 및 가족에게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다.
- 마.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 바. 담당업무에 관해서는 물론, 관련 정보를 항상 수집하는 자세를 갖는다.
- 사. 이용자의 질문을 예상하고, 답할 준비를 한다.
- 아. 이용자 및 가족과 말할 때는 상대가 만족할 때까지 이야기를 경청한다. 그리고 이야기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자. 이야기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낸다.
- 차. 사과할 경우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 정중하게 사과한다.
- 카. 이용자가 이야기할 때는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친다.
- 타. 어려운 언어나 전문용어는 되도록 쓰지 말고, 알기 쉬운 설명을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사후에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파. 이용자에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 조건도 설명한다.
- 하.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기분 좋게 돌아가시도록 정중하게 최선을 다한다.

V 노인학대 대응방법

1. 신고

가. 신고대상

1) 학대피해노인

- 가) 노인 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 나)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 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긴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 가)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나)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주민센터,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관, 연기관 등)

나. 신고의무자

-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 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1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16)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다. 신고시기

- 1) 노인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학대피해노인의 피해 사실 부인,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라. 신고방법

- 1)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즉시 신고

마. 신고자의 권리

-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바. 신고자 보호 조치

- 1) 노인학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하여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2)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 작성 가능
- 3)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 4)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 시, 피고를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 지정 등 소송 진행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시설보호, 신변 경호, 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 가능

Q

노인학대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전화신고:** 국번없이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혹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신고가능합니다.
- **모바일(어플)신고:**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1



앱 마켓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설치

2



메인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 클릭

3



학대발생장소 및
학대발생기간
입력

4



의심되는 학대유형을 하나
혹은
2개 이상 선택

5



촬영(사진, 영상), 음성 녹취,
갤러리 등 유형에 따른 자료
등록 후 신고내용 서술

6



휴대폰 본인인증
확인 후 필수사항
3건 체크

7



STEP1 ~ 5까지
등록한 전체 입력 내용
확인 후 제출

8



접수완료

2. 노인학대 처벌기준



노인학대 처벌기준



법률	내용	처벌
법칙 제55조의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칙 제55조의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신설)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법칙 제55조의4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칙 제57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제61조의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 가족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사항

-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을 마련하고 입소 시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학대 신고·예방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긴급하거나,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신체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보고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법정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노인인권침해 의심 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 112등)

어르신 인권 보호 체크리스트

작성일 : 년 월 일

항 목	내 용	있다	없다
1	어르신을 순간적으로 밀치거나 때린 사실은?		
2	어르신을 위협·협박, 보고·동의 없이 묶거나 신체구속 한 사실은?		
3	어르신에게 목욕 시, 감정을 넣어 물을 흠뻑 뿌린 사실은?		
4	어르신에게 반말이나 고함친 사실은?		
5	어르신에게 짜증스러운 말투, 다그치는 말투로 대한 사실은?		
6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방에 들어가라고 재촉을 한 사실은?		
7	어르신이 벨을 눌러도 가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사실은?		
8	무엇을 요구하면 쓸데없다고 치부하고 못 들은 척, 무시한 사실은?		
9	아프다고 해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한 사실은?		
10	몸을 일으켜 달라거나 휠체어에 앉혀 달라고 하면 모른 척 한 적은?		
11	휠체어 사용 시,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위험 상황이 있었던 사실은?		
12	어르신의 휠체어, 워커, 식판 등을 정리하지 않아 위험했던 사실은?		
13	체위변경 시간과 약 복용 시간(특히, 야간 약 시간)을 어긴 사실은?		
14	식사 또는 약 복용을 거부했으나 보고하지 않고 방임한 사실은?		
15	어르신에게 밥을 안 준다, 여기서 나가라 등의 말을 한 사실은?		
16	어르신의 식수와 식사량을 내 마음대로 줄인 사실은?		
17	어르신의 개인물품(간식)을 동의 없이 처분한 사실은?		
18	기저귀 교체를 요구하면 나중에, 시간 안 됐어요라고 말은 한 적은?		
19	어르신에게 가림막 없이 기저귀나 의복, 팬티를 교체한 사실은?		
20	어르신의 기저귀 교체 시 사전 설명 없이 이불을 확 제친 사실은?		
21	어르신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 몸을 이리저리 함부로 한 사실은?		
22	어르신을 생활실(침실) 또는 특별침실에 가둔 사실은?		
건의 사항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인권관리자 인권보호 점검기준

점검일:

점검자명:

연번	점검 사항	결과
설비 등에서의 인권취약		
1	의복, 기저귀 교체 시 스크린이나 칸막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잘 가려진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3	시설 내부 환경이 보호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4	방문 시 개별 면담장소가 없다.	
5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하지 않다.(온습도계 비치 확인)	
6	시설 내부에 불쾌한 냄새가 배어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7	밀치거나 때리고 고집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8	물건 등을 집어던져 위협한다.	
9	방이나 후미진 곳에 감금한다.	
10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다.	
11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	
12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13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14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상태 고려)	
15	존엄성을 배려하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16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다.	
17	배변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	
18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19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인권환경 개선		
20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21	종사자에게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2	입소자에게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3	시설장과 종사자가 학대발생시 의무적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다.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서울	서울남부	강남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02)3472-1389
	서울북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02)921-1389
	서울서부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02)3157-6389
	서울동부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중랑구	02)470-1389
부산	부산중부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051)468-8850
	부산동부*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051)867-9119
	부산서부	서구, 영도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051)206-1389
대구	대구남부*	남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053)472-1389
	대구북부	동구, 북구, 서구, 중구, 군위군	053)357-1389
인천	인천*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용진군, 중구	032)426-8792
	인천서부	강화군, 계양구, 부평구, 서구	032)569-0533
광주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부, 서구	062)655-4155
대전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042)472-1389
울산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052)265-1389
경기	경기남부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031)268-1389
	경기동부*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광주시,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아산시, 여주시, 양평군	031)736-1389
	경기북부*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양주시, 하남시	031)821-1461
	경기서부*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032)683-1389
	경기북서부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파주시, 동두천, 연천군, 김포시	031)978-1389
강원	강원*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033)253-1389
	강원동부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033)655-1389
	강원남부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횡성군	033)744-1389
충북	충북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043)259-8120
	충북북부*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043)846-1380
충남	충남*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태안군, 홍성군, 세종특별자치시	041)534-1389
	충남남부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041)734-1389
전북	전북*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진안군	063)273-1389
	전북서부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익산시, 정읍시	063)542-1389
전남	전남동부*	고흥군, 곡성군, 경양시,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061)753-1389
	전남서부*	강진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061)281-2391
경북	경북동부*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포항시	054)248-1389
	경북북부*	봉화군,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054)655-1389
	경북서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성주군, 상주시	054)436-1390
	경북남부	경산시, 고령군,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053)716-1389
경남	경남*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창원시(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통영시, 함안군	055)222-1389
	경남서부	거창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055)754-1389
제주	제주시*	제주시	064)757-3400
	서귀포시	서귀포시 관내(17개 읍면동)	064)763-1999

* 표시된 기관에서 센터 운영